

“산재보험”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무엇인가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행위에는 어떤 게 있나요?

- 근로자 아님에도 근로자로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행위
-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행위
- 보험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평균임금을 높게 조작하는 행위
- 요양 중에 취업하여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조작하여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 실제 간병을 받지 않음에도 간병급여를 받는 행위
- 브로커 등 부당한 제3자 개입을 통한 보험급여 편취 행위
-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는 행위

부정수급 신고는 어디로 할까요?

- 전화 : 052-704-7474(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 인터넷 : <https://www.comwel.or.kr> ➡ 고객센터마당 ➡ 신고센터 ➡ 산재 부정수급신고
- 우편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8층 구상관리부

부정수급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 부정수급 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해당자 및 공모자는 **형사처벌** 됩니다.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실시

신고인 보호 및 포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익명신고 가능 및 신고인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비밀보장합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소멸시효완성 금액 제외)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최근 불법 브로커가 산재근로자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가 의심되는 경우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연대책임자 포함) 후 자진하여 신고하면 보험급여의 배액징수와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하는 삶의 희망을 지키는
튼튼한 희망버팀목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객상담 및 안내

대표전화
1588-0075



www.comwel.or.kr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홍보간행물 2023-0027



2023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보상에서 치료·재활까지
알기 쉬운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산재보험 이것 알고 계신가요?

업무상 유산·사산 및 자녀 건강손상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기간 중 업무상 부상, 유해요인 노출 등으로 출생한 자녀가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영상자료(MRI 등)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 MRI, CT 등 영상자료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받습니다.
 - ※ 단, 진료정보교류시스템(영상모듈 설치 등) 참여 의료기관 한함

소음성 난청의 원스톱 장해판정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청력검사, 업무관련성 평가, 장해판정까지 공단병원에서 한 번에 처리하여 빠르고 편하게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 ※ 현재 인천·창원·대구·대전·동해·부산·광주병(의)원 7개소에서 가능

산재보험급여 전용 압류방지계좌가 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를 모든 금융기관의 산재보험급여 전용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부 은행 및 상품별로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확인 후 가입하십시오.

간병급여 자동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청구서 작성 없이 1회 청구만으로 매월 5일 전월분 간병급여를 자동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간병장소가 '재가'이고 간병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함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21.6.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치료비가 산재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산재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공단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 요양급여임에도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비급여로 산재근로자에게 부담시킨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환불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AI가 산재근로자에게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추천하고, 공공취업기관이 보유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정보 등을 매칭하여 최적의 적합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제공합니다.
- 「내일찾기 메타버스」를 통해 상담서비스, 70개외국어 통역 지원과 챗봇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메타버스 이용경로
- 구글스토어에서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 메타버스앱 다운
또는 <https://metaverse.comwel.or.kr/>을 통해 접속



내일찾기 메타버스
바로가기

단 1명의 근로자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산재보험이 보상해드립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통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상담 및 신청(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 신청 후 처리과정을 조회할 수 있나요?

- 고용·산재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진행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인증만으로도 **최초요양·장해·유족급여에 대한 진행사항 상세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핸드폰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에서 진행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나의사건검색(보상)’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접속번호만으로도 상세조회가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재활 서비스 절차를 알고 싶어요!



어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종류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 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 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장례비	•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산재보상 요양절차를 알고 싶어요!

1.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 **요양급여 신청**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가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 발생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 **진료계획서 제출**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4. 치료 종결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 **재요양 신청**
 - 치료 종결 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5.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했을 때 ➡ **추가상병 신청**
 -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는 다양한 재활서비스가 있습니다.

- 우리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요양초기단계 부터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계별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내용

산재발생	
재활상담	▶ 치료부터 직업복귀까지 재활서비스 안내
치 료 중	
의료재활	▶ 추가상병 치료, 병행치료, 의료기관 변경 요양 / 집중재활치료 및 주치의사 면담 실시
심리재활	▶ 다차원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 희망찾기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취미활동반
재활스포츠	▶ 치료 중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지원
직업복귀 지원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를 통한 신체능력회복, 작업능력강화훈련, 사업주 상담 등 지원 ▶ 직장적응훈련 지원(요양종부터 가능) ▶ 직업훈련 : 실업 중인 통원요양자가 치료 후 12급 이상 장해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
치 료 종 결	
재활스포츠	▶ 치료종결 후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지원 - 일반스포츠 : 수영, 헬스, 필라테스 등 14개 종목
사회재활	▶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 적응프로그램 /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상병의 악화, 재발 방지를 위한 진료 지원
직업복귀	
원직장 복귀 지원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타직장취업 지원	▶ 미취업 중인 산재장해인(1급~12급) 직업훈련지원 -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타직장취업 희망 산재근로자 지원 - 구직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천, 일자리 알선 등 - 타직장취업 지원을 위해 재활지원팀을 운영중

● 권역별 재활지원팀 안내 (소속기관 내 소재)

소속기관	관할 소속기관	대표전화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9층	02-2230-9423, 9439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4층	02-2165-3291, 3296
부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5층	051-661-0245, 0258
창원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4, 2층	055-268-0228, 0229
대구지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7층	053-601-7516, 7561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2층	032-451-9335, 9336
수원지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4층	031-231-4425, 4427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천변자로 268, 10층	062-608-0137, 0187
전주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5층	063-240-8172, 8179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16층	042-870-9564, 9565
강원지역본부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	033-749-2330, 2329

근로복지공단에는 소속병원이 있습니다!

전국 13개 소속병원 및 의원에서 산재상병에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의 진료 및 첨단의료장비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센터, 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과 통합적인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업·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사업

1.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의 진료와 첨단장비를 바탕으로 진료 및 재활을 통한 기능회복,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산업보건사업의 기능 수행
2.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산재신청부터 치료·재활·직업복귀까지 소속병원에서 해결!》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근로자는 병원 내에서 각종 보험급여신청, 장해판정, 심리 및 재활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한 번에 제공

재활사업

- [재활전문센터]**
- 환자상태, 가정환경, 주변상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평가→치료→회복→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치료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재활치료, 사회심리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 [수증재활 치료센터]**
- 물의 장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육상 활동에서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재활치료 실시
 - 유연성, 평형성, 근력강화, 근지구력 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1:1치료, 그룹운동치료, 수중운동효과 평가

산업보건사업

-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채용신체검사, 종합건강진단 등
- 보건대행 : 사업장 방문을 통한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사업주의 보건관리에 대한 의무사항 대행
- 환경측정 :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분진 등 총 192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직업병 발생을 예방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병원명	주 소	대표전화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032)500-0114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031)500-1114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055)280-7777
대구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15	053)715-7575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061)720-7114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042)670-5114
태백병원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	033)580-3114
동해병원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11	033)530-3100
정선병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	033)560-7100
경기요양병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031)351-3083
서울의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사옥 20층	02) 2670-0202
광주의원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72-8, 오렌지파크 1층	062) 713-5100
부산의원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051) 790-3303
태백병원 부설케어센터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10-31	033)580-5200
경기요양병원 부설케어센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7	031)359-0514
재활공학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번길 26	032)509-5200